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

제출년월일 : 2020.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0조의2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여 존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40조의2)

⇒ “2020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함.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심의 결과 :

적합[기획예산과-1918(2020.2.13.)]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2. 6. ~ 2. 26.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6) 기획예산과의 2020년 제5회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 원안의결(2020.3.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 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u>202</u> <u>0년 6월 30일</u> 까지로 하되, 구청장 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 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 <u>202</u> <u>4년 12월 31일</u> ----- -----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 연장하고자 함이므로, 그 의안의 시행에 비용발생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

4. 작성자 :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조성원 (☎ 3153-8922)